

종중선산운영관리규정

(2013년 2 월 24일)

경주최씨준유평후손종중

先山管理運營規定

선산 관리 운영 규정

2010년 08월 18일 제정

2011년 02월 20일 개정

2013년 02월 24일 개정

제 1장 總則

총칙

제1조(목적) 본 規定은 先山 및 先塋의 維持管理 및 先祖 및 慶州崔氏峻雲公 後孫의 墳墓設置 및 管理, 時祭奉行 에 관한 諸般 規定을 定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제2조(適用範圍)

적용범위

1. 본 規定은 慶州崔氏峻雲公 後孫中 宗會에 登錄한 宗親에 適用하되 適用範圍는 宗中 理事會의 決議로 加減될 수 있다.
2. 宗中에서 時祭奉行하는 對象 및 範圍는 (별표-1)에 의한다.

제3조(用語의 定意) 본 規定에 適用하는 用語는 다음과 같다.

1. [管理責任者]란 先山 및 先塋의 管理責任者로서 宗中 會長이 된다.
2. [管理 擔當者]란 先山 및 先塋을 直接管理하는 擔當者로서 宗中の 事務局長이 된다. 但 宗中 事務局長이 管理擔當者로 業務遂行이 어려운 境遇 別도 選任된 管理人을 들 수 있다.
3. [伐草]란 先山 및 先塋에서 자란 잔디깎기를 말한다.
4. [莎草]란 先塋의 墓域 및 墳墓에서 자란 잔디깎기 및 잔디 補植 및 補土하는 作業을 말한다.
5. [改莎草]란 先塋의 墓域 및 墳墓의 기존때를 제거하고 새로운 補土에 의하여 때심기 하는 作業을 말한다.

제4조(先山 및 先塋維持 管理 事業)

1. 管理責任者는 年中 先山 및 先塋의 維持保存을 위하여 아래의 事業을 推進한다.
 - 가) 淸州 始祖 靈壇守護 壇域 管理事業 및 淸州市 上堂區 米院面 中理 先山の 維持管理事業
 - 나) 派始祖 靈壇守護 및 壇域管理事業 및 淸州市 龍亭洞 先山 維持管理事業.

다) 先祖墓所 除草 및 伐草事業
선조 묘소 제초 벌초 사업

라) 先祖墓所 改葬 및 遷墓事業
선조 묘소 개사조 천묘 사업

마) 石物工事 및 石物補完工事.
석물 공사 석물 보완 공사

바) 기타 先山 및 先塋의 管理를 위한 必要한 諸般業務
선산 선영 관리 관리 필요 제반 업무

2. 管理責任者는 제1항에 대하여 管理擔當者를 통하여 業務를
관리 책임자 관리 담당자 업무
推進토록한다. 但 管理 擔當者가 自體적으로 業務遂行할 수 없는
추진 단 관리 담당자 자체적 업무 수행
경우 제3자에게 委託하여 遂行할 수 있다.
위탁 수행

제5조 (豫算樹立 및 施行) 예산 수립 시행

1. 管理責任者는 先山維持管理 및 先塋管理를 위한 豫算을 樹立하여
관리 책임자 선산 유지 관리 선영 관리 예산 수립
施行해야 한다.
시행
2. 豫算樹立 및 執行은 宗中規約 및 諸經費支給規定에 의한다.
예산 수립 집행 종중 규약 제 경비 지급 규정

제6조 (墓地管理臺帳) 管理責任者는 墓地管理臺帳을 作成 備置한다, 묘지 관리 대장 관리 책임자 묘지 관리 대장 작성 비치

제7조 (管理人の 選任) 관리인 선임

1. 管理責任者는 先山 및 先塋 그리고 宗財 (林野 其他土地) 保存
관리 책임자 선산 선영 종 재 (林野 其他土地) 보존
管理를 效率的으로 하기위하여 必要時 管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관리 효율적 필요 시 관리인 선임

제8조 (管理擔當者및 管理人の 責任) 관리 담당자 관리인 책임

1. 管理擔當者및 管理人은 先山 및 先塋을 隨時觀察하여 先山 및 先塋의
관리 담당자 관리인 선산 선영 수시 관찰 선산 선영
狀態를 파악하고 補修 補完하여 原來의 狀態로 維持 管理할 責任을
상태 보수 보완 원래 상태 유지 관리 책임
진다.
2. 管理 擔當者및 管理人の 責任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관리 담당자 관리인 책임
- 가) 先山 및 先塋의 隨時觀察 및 狀態把握
선산 선영 수시 관찰 상태 파악
- 나) 儀物의 保存狀態把握
의물 보존 상태 파악
- 다) 不法投入藏 有無確認
불법 투입 장 유무 확인
- 라) 林野狀態觀察 (林木盜伐 등)
임야 상태 관찰 임목 도벌
- 마) 宗中 理事會가 委任한 業務
종중 이사회 위임 업무
- 바) 其他 宗財 管理에 관한 業務
종 재 관리 업무
3. 管理 擔當者및 管理人은 제2항의 業務를 파악하기 위하여 最小
관리 담당자 관리인 업무 최소
1개월에 1회以上 定期觀察을 實施하고 그 狀態를 宗中 理事會에
이상 정기 관찰 실시 상태 종중 이사회
報告 하여야한다. 특히 墳墓觀察은 時祭墳墓뿐 아니라 해당 지역내
보고 분묘 관찰 시제 분묘
一般墓도 觀察하여야한다.
일반 묘 관찰

제9조 (管理人의 報酬)

1. 管理人^{관리인}에게 業務遂行^{업무수행}을 위한 一定報酬^{일정 보수}를 支給^{지급}할 수 있다.
2. 報酬^{보수}의 支給^{지급}은 宗中^{종중}의 諸經費支給規定^{제정 규정} 또는 理事會^{이사회}의 決議^{결의}에 의한다.
3. 1항 業務外^{업무}에 宗中^{종중}이나 理事會^{이사회}의 委託^{위탁}에 의한 業務^{업무}에 대해서는 別途^{별도}의 費用^{비용}을 支拂^{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宗員 및 管理擔當者. 管理人의 問責)

1. 先山^{선산} 및 先塋^{선영}의 管理^{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항의 경우 管理人^{관리인}을 責任追窮^{책임추궁}하고 更迭^{경질}할 수 있다.
 - 가) 先山^{선산} 및 先塋^{선영}管理^{관리} 및 守護^{수호}에 不謹^{불근엄}할 때
 - 나) 宗儀^{종의}에 不從^{부종}할 때
2. 宗中^{종중}의 先山^{선산}등 宗中財産^{종중 재산} 保存^{보존}에 있어서 다음 각항의 狀況^{상황}이 發生^{발생}하였을 때는 依法措置^{의법조치} 및 宗中^{종중}의 懲戒委員會^{징계위원회}에 回附^{회부} 懲戒^{징계}한다.
 - 가) 宗中^{종중} 林野^{임야}를 毀損^{훼손}하였을 때
 - 나) 墳墓^{관묘}에 侵害^{침해}가 있을 때
 - 다) 不法投入藏^{불법 투입 장}이 있을 때
 - 라) 林木^{임목}의 盜伐^{도벌}이 있을 때.
 - 마) 儀物^{의물}의 毀損^{훼손}이 있을 때

제11조 (賞罰規定)

1. 宗員^{종원} 및 管理擔當者^{관리 담당자}. 管理人^{관리인}은 제10조 2항 각호의 狀況^{상황}을 發見^{발견}하였을 시는 制裁指示^{제재 지시}등 先措置^{선 조치}를 취하고 그 事實^{사실}을 理事會^{이사회}를 통하여 全宗員^{전 종원}에게 通報^{통보}하며, 그 行爲者^{행위 자}가 宗員^{종원}일 때는 宗中^{종중} 懲戒委員會^{징계위원회}에 回附^{회부}하여 懲戒措置^{징계 조치} 하여야하며, 行爲者^{행위 자}가 宗員^{종원}이 아닌 경우 依法措置^{의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宗員^{종원} 또는 管理擔當者^{관리 담당자}. 管理人^{관리인}이 주어진 業務^{업무}를 성실히 遂行^{수행}하여 宗中^{종중}의 財産保存^{재산 보존}에 懸隔^{현격}한 貢獻^{공헌}을 한 경우 宗中^{종중} 賞罰委員會^{상벌 위원회}에 上申^{상신}하여 褒賞^{포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宗中^{종중} 賞罰規定^{상벌 규정}을 準用^{준용}한다.
4. 宗中^{종중}의 位相^{위상}을 높이고, 宗中^{종중}의 發展^{발전}을 위하여 獻身^{헌신}한자는 宗中^{종중} 賞罰委員會^{상벌 위원회}에 上申^{상신} 褒賞^{포상}할 수 있다.

제 2장 (葬 墓)

제12조 (適用法規)

葬墓에 관한 適用法規는 : 葬事法과 同施行令 (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 法律) 및 山林法 그리고 宗中の 先山管理運營規定에서 정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3조 (葬地 利用權限)

1. 葬墓와 遷墓를 위한 葬地의 利用權限은 慶州崔氏峻雲公後孫 및 配偶者에 한하며, 葬地를 利用時 墓主는 管理擔當者를 통하여 宗中の 承認을 받아야한다.
2. 1항의 承認을 받은 경우 墓主는 宗中の 先山管理運營規定에서 定한 葬墓의 設置方法에 따라 設置하여야한다.
3. 2항의 規定에 따르지 않고 葬墓를 設置하는 경우, 宗中 懲戒委員會에 回附하여 懲戒하며, 宗中の 葬墓撤去 및 指示에 따라야한다. 만약 宗中の 撤去指示에 따르지 않을 경우 依法措置하고, 宗中에서 強制 代執行을하며 이에 所要된 費用에 대한 賠償請求를 하여야한다.

제14조 (葬墓의 方法)

1. 葬墓의 方法은 自然葬으로 하며 種類는 다음과 같다.
 - 가) 埋葬形 自然葬
 - 나) 樹木形 自然葬
2. 埋葬形 自然葬의 設置方法
 - 가) 火葬후 遺骨을 곱게 粉碎한 후 고은 흙과 섞은 후 漢紙로 만든 遺骨函에 담는다.
 - 나) 宗中先山에 造成된 自然葬墓域內에 가로 .세로 .깊이 30cm로 잔디를 퍼낸 후 그 속에 遺骨函을 넣고 흙과 잔디를 덮는다.
 - 다) 自然葬 墓域에 設置된 標識石에 死亡 일자순으로 故人的 姓銜 및 生卒年度 및 父母의 姓銜을 刻字하여 表示한다.
3. 樹木形 自然葬의 設置方法
 - 가) 火葬후 遺骨을 곱게 粉碎한 후 고은 흙과 섞은 후 韓紙로 만든 遺骨函에 담는다.
 - 나) 宗中先山중 樹木葬林으로 植栽된 나무 중 選定하여 1m반경 안에 가로 .세로 .깊이 30cm로 퍼낸 후 그 속에 遺骨函을 넣고 흙으로 덮는다.

다) 가로: 5cm 세로:10cm 크기로 故^{고인}人^의 姓^성銜^합을 名^명牌^패로 표시 한다.

4. 自然^{자연}葬^장墓^묘域^역이 造^조成^성되^기 전 死^사亡^망하^여 宗^종中^중先^선塋^영에 葬^장墓^묘하^는 經^경우,
宗^종中^중에서 別^별途^도提^제供^공하^는 臨^임時^시墓^묘域^역에 自^자然^연葬^장方^방法^법으로 安^안置^지후
自然^{자연}葬^장墓^묘域^역이 造^조成^성된 후 緬^면禮^례奉^봉行^행 하^여야 한다. 但^단이 經^경우 遺^유骨^골函^함은
沙^사器^기로 만^든 遺^유骨^골函^함을 臨^임時^시로 使^사用^용할 수 있다.
5. 宗^종中^중先^선山^산에 造^조成^성된 自^자然^연葬^장墓^묘域^역이외의 場^장所^소에서의 葬^장墓^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절대 禁^금한다.
6. 淸^청州^주市^시 龍^용亭^정洞^동 先^선山^산의 先^선塋^영에 既^기設^설置^치된 墳^분墓^묘는 向^향後^후 緬^면禮^례奉^봉行^행時^시
自^자然^연葬^장으로 淸^청原^원郡^군 米^미院^원面^면 中^중理^리 先^선山^산에 造^조成^성된 先^선塋^영으로 緬^면禮^례키로
한다

제15조 (特^특例^례條^조項^항) 제14조의 葬^장墓^묘의 方^방法^법은 다^다음의 經^경우 適^적用^용하^지 않^{으며},
既^기存^존方^방式^식대^로 葬^장墓^묘키로 한다.

1. 淸^청州^주市^시 上^상堂^당區^구 米^미院^원面^면 中^중理^리 先^선山^산에 造^조成^성된 先^선塋^영의 墳^분墓^묘중 다^다음의 墳^분墓^묘
가) 通^통德^덕郎^랑 諱^휘 泳^영河^하祖^조父^부님 設^설檀^단(碑)
나) 嘉^가善^선大^대夫^부 諱^휘 仕^사凱^개祖^조父^부님 墳^분墓^묘
다) 淸^청社^사原^원從^종公^공臣^신 諱^휘 繼^계福^복祖^조父^부님 墳^분墓^묘
라) 通^통政^정大^대夫^부 諱^휘 祈^기命^명祖^조父^부님 墳^분墓^묘
마) 折^절衝^충將^장軍^군 諱^휘 汝^여弼^필祖^조父^부님 墳^분墓^묘
바) 折^절衝^충將^장軍^군 諱^휘 仁^인秀^수祖^조父^부님 墳^분墓^묘
2. 淸^청州^주市^시 龍^용亭^정洞^동 先^선山^산의 先^선塋^영 및 기^기타 墳^분墓^묘중 다^다음의 墳^분墓^묘
가) 九^구谷^곡處^처士^사 諱^휘 峻^준雲^운公^공 墳^분墓^묘
나) 諱^휘 成^성字^자 4⁴분 祖^조父^부님 墳^분墓^묘
다) 諱^휘 秀^수字^자 4⁴분 祖^조父^부님 墳^분墓^묘
3. 다^다음의 境^경遇^우 宗^종中^중先^선山^산內^내 別^별途^도 造^조成^성된 位^위置^지에 功^공德^덕碑^비等^등을 設^설置^치할 수 있
다.
가) 規^규約^약 제11조 4⁴항에 의^의하^여 褒^포賞^상을 받^은 자
나) 宗^종中^중 理^이事^{사회}會^회의 薦^천擧^거로 宗^종中^중總^총會^회의 承^승認^인을 받^은 자

제 3장 (墳墓管理)

제16조 (墳墓管理 作業의 種類)

1. 墳墓管理의 對象과 範圍은 제2조 2항 별표-1를 基準으로 한다.
2. 墳墓管理 作業의 種類는 除草, 伐草, 莎草, 및 改莎草, 遷墓 및 破墓 등으로 作業의 時期와 回數는 다음의 각호에 準한다.
 - 가) 除草作業은 陽曆 5~6월에 實施한다.
 - 나) 伐草作業은 陰曆 7~8월에 실시한다.
 - 다) 莎草 및 改莎草는 陽曆 4~5월에 實施하되 再施行 時期는 最小 10年 經過후 墓地의 狀態에 따라 再施行할 수 있다.
3. 莎草, 改莎草, 遷墓 및 破墓의 選定과 施行은 宗中事務局이나 管理擔當者가 調査한 資料에 따라 理事會에서 決議로 施行한다.

제17조 (除草 및 伐草作業)

1. 除草作業은 人力作業으로 하되 부득이 除草劑를 사용할 경우 除草劑 使用規定에 따라야 한다.
2. 除草劑 使用時 撒布者는 有經驗者로 하며, 반드시 安全裝具를 着用하고 施行해야 한다.
3. 伐草作業은 雜草除去와 잔디깎기를 同時에 施行하며, 잔디깎기는 2cm~6cm로 한다.
4. 除草作業시 補土를 實施하되 잔디의 生育狀態가 不良할 경우 잔디補植을 한다.

제18조 (莎草 및 改莎草 作業)

1. 莎草 및 改莎草 作業을 위한 既存 잔디除去는 잔디가 生育되었던 깊이 까지 충분히 除去 하여야 한다.
2. 잔디除去時 墳墓의 坐向이 바뀌지 않도록 表示봉을 세운 후 잔디除去 作業을 하여야 한다.
3. 莎草 및 改莎草의 경우 잔디심기는 良質의 土砂로 補土한 후 하되 封墳잔디심기는 평때심기로 하며, 그 外地域은 塹때심기를 한다. 但 特別히 塹때심기를 指定한 경우 例外로 한다.

제 4장 (時祭奉行)

제19조 (時祭奉行日)

1. 時祭^{시제}의 對象^{대상}과 範圍^{범위}는 제2조 2항 (별표-1) 을 基準^{기준}으로 한다.
2. 時祭奉行日^{시제奉行일}은 每年^{매년} 陰曆^{음력} 10월10일이 지난 日曜日^{일요일}로 한다.

제20조 (時祭準備)

1. 宗中^{종중}의 執行部^{집행부}는 宗中^{종중}의 諸經費支給規定^{제 경비 지급 규정}에 依據^{의거} 時祭^{시제}의 祭物^{제물}을 準備^{준비}한다.
2. 宗中^{종중}의 執行部^{집행부}에서 부득이 時祭準備^{시제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專門業體^{전문업체}에 依頼^{의뢰}하여 準備^{준비}한다.

제21조 (時祭奉行)

1. 管理責任者^{관리 책임자}는 時祭奉行日前^{시제奉行일 전} 最小^{최소} 2주전에 全體宗員^{전체 종원} 및 連絡^{연락}가능한 後孫^{후손}들에게 時祭奉行日^{시제奉行일} 및 奉行方法^{奉行방법}등을 個別^{개별} 通知^{통지}하여 많은 宗親^{종친}이 參禮^{참례}하도록 해야 한다.
2. 時祭奉行^{시제奉行}은 可及的^{가급적} 墓前^{묘전}에서 奉行^{奉行}하되 祭日^{제일}의 氣象條件^{기상 조건} 등을 考慮^{고려}하여 宗中會議室^{종중 회의실}에서 奉行^{奉行}할 수 있다.
3. 時祭奉行方法^{시제奉行방법}은 門中家禮方式^{문중가례 방식}에 의하되 嚴肅^{엄숙}하고 敬虔^{경건}하게 奉行^{奉行}한다.

제22조 (其他事項) 本規定에 包含^{포함} 되지 않은 諸般事項^{제반 사항}은 既存^{기존} 慣例^{관례} 또는 宗中理事會^{종중 이사회}의 決議^{결의}에 의하여 施行^{시행}한다.

附則^{부칙}

제1조 (施行日) 本規定은 制定日^{제정일}로부터 施行^{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1. 本規定^{본 규정} 制定^{제정} 이전의 墳墓管理^{분묘 관리}는 本規定^{본 규정}의 該當條項^{해당 조항}에 의하여 處理^{처리}된 것으로 看做^{간주}한다.
2. 本規定^{본 규정} 이전에 設置^{설치}된 墳墓^{분묘}나 假墓^{가묘}는 既存^{기존}의 設置權利^{설치 권리}를 認定^{인정}하나 이후 遷墓^{전묘}등의 事由^{사유}가 發生^{발생}할경우 既存^{기존}의 墳墓設置^{분묘 설치}의 權利^{권리}는 消滅^{소멸}되며 宗中^{종중}의 先山管理運營規定^{선산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時祭奉行墳墓)

墓誌銘	配偶者	繼配偶者	墓設治場所
通德郎 諱 永河 設壇(碑)	淑夫人全州李氏		청주시 미원면 중리 선영
訓練院檢正 諱 論慶(設壇)	淑人 餘興閔氏		“
嘉善大夫 知中樞府事 諱 仕凱	貞夫人 金海金氏		“
靖社原從功臣 諱 繼福	貞夫人慶州金氏		“
通政大夫 諱 祈命	淑夫人楊州趙氏	淑夫人 長城徐氏	“
折衝將軍 諱 汝弼	淑夫人 長城徐氏		“
九谷處士 諱 峻雲	孺人 全州崔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영
通訓大夫 軍資監正 諱 成大	淑人 淸州郭氏		“
通訓大夫 軍資監正 諱 成殷	淑人 長水黃氏		“
學生府君 諱 成五	孺人 慶州金氏		“
學生府君 諱 成垕	孺人 慶州李氏		청주시 문익면 노현리 선산
通訓大夫 工曹參議 諱 德秀	淑夫人 密陽孫氏	淑夫人 晉州河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영
折衝將軍 副護軍 諱 仁秀	淑夫人密陽孫氏		청주시 미원면 중리 선영
通政大夫 刑曹參議 諱 學秀	淑夫人 延安李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영
學生府君 諱 達秀	孺人 淸州郭氏		“
學生府君 諱 義秀	孺人 安東金氏	孺人 密陽朴氏	청주시 문익면 노현리 선산
學生府君 諱 宗勳	孺人 淸州郭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영
學生府君 諱 宗壽	孺人 新平李氏		“
通訓大夫 司僕寺正 諱 宗默	淑夫人 江陵金氏		“
通政大夫 嘉善大夫 諱 宗煜	貞夫人南原梁氏		失傳
學生府君 諱 宗烜	孺人 密陽孫氏	孺人 密陽孫氏	청주시 미원면 중리 선영
學生府君 諱 宗益	孺人 慶州金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영
嘉善大夫 工曹參判 諱 宗燦	貞夫人 淸州郭氏		“
嘉善大夫 副護軍 諱 宗杰	貞夫人 安東金氏		“
訓練院 判官 諱 宗熙	宣人 密陽朴氏		“
學生府君 諱 宗燾	孺人 慶州咸氏		“
學生府君 諱 宗全	孺人 仁川李氏	孺人 南原梁氏	청주시 문익면 노현리 선산

		孺人 慶州金氏	
學生府君 諱 宗炆	孺人 江陵金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영
學生府君 諱 宗乾	孺人 昌原黃氏		청주시 문익면 노현리 선산
學生府君 諱 宗坤	孺人 昌原黃氏	孺人 慶州金氏	“
學生府君 諱 宗憲	孺人 大口徐氏		“
31位	31位	7位	69位